# 보안정책 지침

사규번호 : 0000

제정번호 : Version 1.0

# 개정이력

개정 번호	조항 번호	개정내용요약	개정 일자	담당부서	담당자
1.0	New	신규제정	00.00.00		

제 1장	총칙		5
저	1조	(목적)	5
저	2조	(적용범위)	5
저	3조	(용어의 정의)	5
저	4조	(권한과 책임)	7
제 2장	보안관리	의 체계	9
저	5조	(연구보안관리지침의 제4	
저	6조	(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)	9
저	7조	(연구보안관리 조직 구성 및 계획 수립)	10
저	8조	(연구보안관리 지침의 교육 기획 및 시행)	10
저	9조	(보안관리 지도 감사 계획 및 수행)	11
저	10조	(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도 및 점검)	12
저	11조	(비상시 대응계획 수립 및 점검)	12
저	12조	(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)	12
제 3장	참여 연	구원 관리	12
저	13조	(임직원 등의 보안서약서 징구)	12
저	14조	(퇴직/전출/전직/휴직 예정자에 대한 보안조치)	12
저	15조	(외부기관 파견자 및 방문자에 대한 보안조치)	13
저	16조	(유출혐의자/전력자에 대한 특별 보안관리조치)	15
저	17조	(임직원 등의 출장 및 귀국보고관련 보안조치)	15
저	18조	(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)	16
제 4장	연구개팀	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	17
저	19조	(연구과제 산출물의 등급표기)	17
저	20조	(연구과제 성과물의 특허권, 지식재산권 확보)	17
저	21조	(연구과제 성과물의 무단유출 방지)	17
저	22조	(연구과제개발 사업 수행결과의 해외 기술이전)	18
저	23조	(사업수행결과의 활용 및 실시)	18
제 5장	연구시설	널관리	19
저	24조	(연구시설 내부 출입 통제)	19
저	25조	(연구시설 출입자의 출입권한 관리)	19
제 6장	국가연-	구개발과제 연구노트 관리	20
저	26조	(연구노트의 작성의무)	20
저	27조	(연구노트의 요건)	20
저	28조	(연구노트 작성 매체)	20
저	29조	(연구노트 작성방법)	20
저	30조	(점검자)	21
저	31조	(연구노트 관리부서)	22
저	32조	(연구노트의 소유)	22

저	33조	(분실)	22
저	34조	(보관 및 관리)	22
저	35조	(공개)	23
저	36조	(폐기)	23
제 7장	연구과제	데 관련 정보통신망 관리	24
저	37조	(연구과제 시설 네트워크 보호)	24
저	38조	(연구과제 정보시스템 권한관리)	24
부 칙			24

## 제 1장 총칙

#### 제 1조 (목적)

본 지침은 OOO (이하 "회사"라 한다)가 수행하는 자체연구개발과제 및 국가연구개발사업(이하 "연구개발과제"라 한다)의 모든 유·무형 자산을 다양한 위험과 불법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활동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장 보안관리 체계

#### 제 2조 (연구보안관리지침의 제·개정·폐지)

- 1. 회사의 연구보안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연구보안관리 지침으로 운영-하며, 이에 대한 제개정 ②폐지는 연구보안심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, 사내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2. 연구보안심의회는 연구사업특성, 업무여건 및 대내외 보안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구보안관리 지침을 수립하고, 사규에 반영하여 임직원 등에게 공지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- 3. 연구보안심의회는 매년 최소 1회 연구보안관리 지침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, 적정성 검토 시 관련 법령의 제②개정②폐지 여부를 포함한 준법성 검토를 같이 수행하여 야 한다.
- 4. 연구보안관리 지침의 내용에 하기와 같은 사유로 영향을 주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, 즉시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.
  - 1. 회사의 보안원칙이나 보안체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
  - 2. 연구조직의 개편, 변경으로 보안의 역할과 책임의 변경이 있는 경우
  - 3. 회사의 내·외부 보안환경 등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
  - 4. 연구개발과제에 새로운 보안위협 또는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
  - 5. 현행 법령 또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
  - 6.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
- 5. 회사정보보안담당자는 회사 내 연구개발 업무특성 및 보안요구사항, 현행 법령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구보안심의회에게 연구보안관리 지침의 제②개정②폐지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.
- 6. 연구보안심의회는 회사정보보안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②개정 ② 폐지의 필요성 및 제출된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
  ◎ 가정 ② 폐지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
- 7. 연구보안관리 지침의 제 개정 ② 폐지의 검토요청 시 하기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, 요청은 문서화되어 연구보안심의회에 전달되어야 한다.
  - 1. 요청자 정보(부문, 요청부서, 이름)
  - 2. 요청내역 (제②개정②폐지 여부)
  - 3. 요청사유 및 개선제안

#### 제 3조 (연구보안심의회 구성 및 운영)

- 1.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 개발과제 보안관리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임원이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.
- 2. 연구보안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  - 1.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지침의 제 ♥ 개정 ♥ 폐지
  - 2.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
  - 3.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·사후 조치검토 및 개선사항 도출
  - 4. 연구개발과제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
  - 5.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3.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 산하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업무의 계획·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 심의회 간사를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.
- 4.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운영관리를 위해 연구개발 조직-별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으로 정한다.
- 5.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보안관리 운영을 위해 자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6.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인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, 해당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은 연구보안심의회 간사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.

#### 제 4조 (연구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)

- 1. 연구개발 보안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해당인원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관리의 책임이 있다.
- 2. 연구개발 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변경 발생 시 회사정보보안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3. 연구개발 보안관리 담당자는 필요 시 연구과제의 보안관리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4. 연구개발 보안관리 담당자는 연구보안관리 계획의 진행경과 및 실적에 대한 결과를 최소 연 1회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5. 연구보안관리 계획서에는 하기 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.
  - 1. 연구보안관리 지침의 교육 일정 (임직원 등)
  - 2. 자체보안진단 일정 (국가연구개발과제 중 보안과제)

#### 제 5조 (비밀번호보안정책)

- 1. 비밀번호 최대 사용 기간은 60 일로 설정한다
- 2. 비밀번호 임계값은 10 회로 설정한다.

#### 제 6조 (계정 정책)

- 1. 세션타임아웃은 600초 이상으로 설정한다.
- 2. 관리자계정은 admin, administrator 2개로 관리한다.

# 제 7조 (시간 정책)

1. 시간동기화는 하지 않아도된다.

# 제 8조 (백신 정책)

1. V3백신 설치를 필수로해야한다.